

# 고 시

## ● 환경부고시제2020-171호

「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」 제1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4에 따른 「녹색경영기업 금융지원시스템 운영규정(환경부고시 제2017-39호)」를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 고시합니다.

2020년 8월 6일

환 경 부 장 관

녹색경영기업금융지원시스템 운영규정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 
녹색경영기업금융지원시스템 운영규정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 
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8조(재검토기한)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

### 환경성 평가항목 및 기준

구분	평가항목	세부평가항목	
I. 정량 평가 (70)	환경관리수준	대기	대기오염물질 배출관리 수준 대기오염물질 배출 등 개선관리 수준 대기오염관련 부과금 등 <u>대기 업종별 산업리스크</u>
		수질	수질오염물질 배출관리 수준 수질오염물질 배출 등 개선관리 수준 수질오염관련 부과금 등 <u>수질 업종별 산업리스크</u>
		유해화학 물질	유해화학물질 배출관리 수준 유해화학물질 배출 등 개선관리 수준 <u>화학물질 업종별 산업리스크</u>
		폐기물	폐기물 배출관리 수준 폐기물 재활용 수준 폐기물관련 부담금 등 <u>폐기물 업종별 산업리스크</u>
II. 정성 평가 (30)	환경경영활동	환경관리	환경경영체계 등 관리활동 관련 실적 우수환경경영 관련 지정 등 현황
		환경인증	환경기술, 제품 등과 관련한 인증실적
III.환경오염리스크(-20)		환경법규 위반현황	기업의 환경오염물질배출 등 점검 위반사항

■ 녹색경영기업금융지원시스템 운영규정 [별지 제3호서식]

보안각서

(정보이용자용)

- 1. 소속기관명:
- 2. 소속부서명:
- 3. 성 명: (생년월일: )

본인은 00000(수탁기관명) 소속직원으로서, 녹색경영기업금융지원시스템의 환경성 평가 정보를 활용함에 있어 업무상 취득한 제반 기밀사항 및 자료 등을 외부에 누설 또는 유출·도용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고, 관련 정보를 고시대로 해당 목적에만 사용할 것이며, 만약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보안 관련 법령에 따른 처벌 및 제재조치를 받을 것임. 다만,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 등의 경우에는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.

이와 같이 서약하고 본 각서를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  
 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귀하

■ 녹색경영기업금융지원시스템 운영규정 [별지 제4호서식]

비밀엄수 서약서

(시스템관리자용)

본인은 녹색경영기업금융지원시스템을 운영 또는 이를 활용한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사항을 엄숙히 서약합니다.

- 1. 본인은 녹색경영기업금융지원시스템의 운영 또는 환경성 평가의 보조 업무가 기업의 경영 활동과 관련된 중대한 사항을 이해하고 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않겠습니다.
- 2. 본인은 비밀엄수서약 이후 녹색경영기업금융지원시스템의 구축·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비공개정보를 누설하거나 공개할 경우 보안 관련 법령에 따른 처벌 및 제재조치를 받을 것임. 다만, 부패행위신고 및 공익신고 등의 경우에는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.

이와 같이 서약하고 본 각서를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  
 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귀하

●국토교통부고시제2020-542호

부산강동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및 지형도면 등

「공공주택 특별법」 제6조에 따라 부산강동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하고, 같은 법 제1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0년 8월 6일

국토교통부장관

1. 주택지구의 명칭, 위치 및 면적
  - 가. 명 칭 : 부산강동 공공주택지구
  - 나. 위 치 : 부산광역시 강서구 강동동 일원
  - 다. 면 적 : 176,622㎡
2. 주택지구의 지정일 : 관보게재일
3. 사업의 종류 : 「공공주택 특별법」 제2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
4. 공공주택사업자의 명칭,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

명칭	소재지	대표자 성명
한국토지주택공사	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(충무공동)	변 창 흡

5.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, 지번, 지목, 면적,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(법인의 경우에는 명칭), 주소 : 붙임1
  6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18조, 제22조 및 제22조의2에 따른 도시·군기본계획의 수립·변경 : 붙임2
  7.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 :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(<http://luris.molit.go.kr>)에서 열람할 수 있음
  8. 주거복지 로드맵에 의한 공공주택 확보와 혁신성장지원 및 경제활력 보강을 위한 정부의 국유재산 토지개발사업의 신속한 추진 등 정책실현을 위하여 「공공주택 특별법」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제1호에 따라 국가의 계획이나 조정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시·도지사에게 위임된 동조제1항의 각호의 권한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행사함
  9. 관계 서류의 열람방법 : 부산광역시 강서구청 건설과(051-970-4714),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(051-460-5991)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
- 붙임1 :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, 지번, 지목, 면적,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, 주소

연번	소재지 (부산광역시)	지번		지목	면적(㎡)		성명	토지소유자		관계인			비고
		본번	부번		공부면적	편입면적		주소	공유지분	성명	주소	권리의종류	
1	강서구 강동동	18	124	도	6,074	868	국토교통부						
2	강서구 강동동	20		대	12,136	12,136	기획재정부						
3	강서구 강동동	21	1	전	13,194	13,191	기획재정부						
4	강서구 강동동	21	2	전	817	817	기획재정부						
5	강서구 강동동	21	3	도	276	276	기획재정부						
6	강서구 강동동	21	4	도	83	58	기획재정부						
7	강서구 강동동	21	6	제	122	114	기획재정부						
8	강서구 강동동	21	7	제	902	412	국토교통부						
9	강서구 강동동	21	8	전	258	235	기획재정부						
10	강서구 강동동	22	1	대	307	307	기획재정부						
11	강서구 강동동	22	2	도	2	2	기획재정부						
12	강서구 강동동	23	1	대	257	182	기획재정부						